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영농형 태양광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전설비의 설치기준)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발전설비”라 한다)의 구조·규격, 설치 간격, 차광률, 농기계 통행공간, 배수·관수시설, 안전시설 및 원상회복이 가능한 기초·지지구조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 모듈(이하 “모듈”이라 한다)은 발전사업부지 전반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도록 편중되지 않게 배치할 것
2. 발전사업부지의 차광률은 모듈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발전사업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고, 100분의 30 미만일 것

3. 발전설비의 구조물 최저 높이는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지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지대의 중심 간 거리는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지지대·기초·인버터·변압설비·접속함 등 발전설비 설치·운영으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가 곤란하게 되는 면적(이하 “시설물 점유면적”이라 한다)은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로 할 것
5. 농기계의 진입·회전·작업, 농작업자의 통행, 농업용수의 공급·배수, 농산물의 수확·반출 및 인접 농지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모듈에서의 낙수, 토양유실, 토양다짐, 배수장애, 농업용수 오염, 눈부심 및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영농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7.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안전 기준, 구조안전 기준, 화재·풍수해 예방 기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8. 발전사업기간 만료, 허가취소, 사용권원 소멸 또는 임대차 종료 시 일반적인 방법으로 발전설비를 철거하고 농지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출된 서류 또는 자료만으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물별·지역별 영농 여건, 발전설비의 기술 수준, 농지의 보전상태, 농기계 이용 여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및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 적용에 필요한 차광률·시설물 점유면적의 산정방법, 구조물 최저 높이·지지대 중심 간 거리의 측정방법, 낙수 피해 방지조치의 기준과 원상회복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발전설비의 구조·규격 또는 안전에 관하여 전기·건축·소방·재난안전·환경 등 관계 법령에서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등

제3조(농업경영 확인) ① 영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농작업 위탁계약서, 농기계 사용 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2. 공익직불금 등록·수령 관련 서류, 영농일지, 사진·영상 등 농업경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업경영 사실과 그 계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② 영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또는 농자재 구입자료, 농산물 판매

자료, 영농일지 등 객관적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청년농어업인 농업경영 확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확인할 때에는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청년농어업인이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청년농어업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조회 또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농업경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청년농어업인에게 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발전사업부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또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사업부지의 지번별 조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지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현황사진
2. 발전사업부지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발전사업부지의 소유권·임차권·사용대차권 또는 그 밖의 사용권원을 증명하는 자료
4. 임차농지의 경우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갱신 가능성 및 법

제18조에 따른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발전사업부지가 영 제7조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발전사업부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된 경우 제1항의 자료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같은 소유자·임대인 또는 같은 사용권원에 속하는 필지는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요건 중 법 제10조에 따라 의제되는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12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로 확인한다.

제6조(발전사업기간 연장) ①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전사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존 허가증
2. 연장하려는 기간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3. 발전사업부지의 사용권원이 연장기간 동안 유지됨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임차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가능성 및 농지임대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4. 발전사업자가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5. 최근 3년간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자료. 다만, 최초 허가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행자료로 한다.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점검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주민환원 의무가 있는 경우 주민환원 실적 및 향후 이행계획

8. 원상회복 비용의 확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심사할 때 기존 허가대장, 준수사항 이행 확인 결과 및 관계 행정정보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 중 제2항에 따른 자료, 이미 제출되어 보관 중인 자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시 제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자료가 최신 상태가 아니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이 의심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존 허가증에 연장사항을 적거나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7조(주민 의견수렴) ① 신청인이 영 제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 사업명, 사업위치, 부지면적, 발전용량 및 사업기간
2. 공고기간, 공고방법, 열람장소 및 열람자료의 주요 내용
3.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경우 그 일시·장소, 참석자 수, 설명자료 및 질의·답변 요지

4.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내용,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및 대안 검토 결과
5. 인접 농지의 소유자·임차인, 인접 읍·면·동 주민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추가 통지·협의 내용
6. 주민 의견수렴 결과 변경된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주민환원계획 또는 피해방지대책
7. 공고문, 게시사진, 참석자 명부, 회의록, 제출의견 사본, 설명자료 등 주민 의견수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신청인은 설명회 개최 14일 전까지 설명회의 일시·장소·주요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을 해당 시·군·구와 읍·면·동의 인터넷 홈페이지, 발전사업부지가 속한 리·통의 게시판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주민설명회에서 발전사업의 위치·규모·기간, 발전설비의 배치·구조·안전관리, 영농계획, 농기계 이용계획, 인접 농지 영향저감대책, 경관·환경·재해·생활환경 영향 및 주민환원계획을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④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신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주민설명회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대체 의견수렴방법을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에 적어야 한다.

제8조(허가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법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의 농업인에 한정한다)
3.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인서
4. 제5조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자료. 이 경우 신청인이 농지 임차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증 사본 또는 전기사업 허가 신청·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전기사업 허가 신청·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전까지 전기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6.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
7. 제9조에 따른 발전설비계획 및 설계도서
8. 제10조에 따른 영농계획
9. 제12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관련 서류
10. 발전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보험가입계획, 안전관리계획, 인접 농지 피해방지계획 및 발전사업 종료 후 발전설비 철거·폐기물 처리계획

11.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 제23조에 따른 주민환원계획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료로 허가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후단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사유 및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발전설비계획) ① 제8조제1항제7호의 발전설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설비의 종류, 설비용량, 모듈·인버터·변압설비 등 주요 설비의 규격·수량·성능 및 인증 여부
2. 발전설비의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기초도, 전기단선결선도 및 계통연계 예정 지점
3. 발전설비의 구조물 최저 높이, 지지대 간 거리, 모듈 배열, 차광률, 시설물 점유면적 및 농기계 통행공간
4. 구조안전, 전기안전, 화재예방, 낙뢰·누전·감전 방지, 태풍·강풍·대설·침수 등 재해예방에 관한 검토
5. 배수·관수시설, 낙수 저감시설, 토양유실 방지사설, 농작업자 안전시설 및 출입통제·안전표지 계획
6. 시공방법, 공사기간, 공사 중 농업생산활동 보호계획, 폐기물·소음·비산먼지·토양오염 방지계획
7. 발전설비의 유지관리계획, 점검주기, 점검항목, 사고·고장 발생 시

조치계획 및 관계기관 보고체계

8. 발전사업 종료 또는 허가취소 시 철거·원상회복 방법, 복구비용 산정 및 비용 확보방안

9.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전설비의 영농 병행 가능성, 안전성 및 원상회복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전설비계획에는 전기·구조·건축 각 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설계도서, 구조검토서 및 전기안전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설계·검사·확인 절차를 거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영농계획) 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농계획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의 이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사업부지의 지번별 면적, 이용 현황, 토양·용수·배수 여건 및 영농 여건
2. 재배하려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품종, 재배면적, 작부체계(作付體系), 재배기간 및 재배방법
3. 생산물의 수확·판매·자가소비 등 처분계획
4. 발전사업부지의 지번별 경작·재배 면적 및 그 산정 근거
5. 발전설비 설치 전후의 일조·통풍·배수, 농기계 통행·작업 및 농작업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고려한 영농방법
6. 발전사업자의 농업생산활동 이행체계와 이에 필요한 참여인력(영농책임자를 포함한다), 노동력 확보방안, 농기계·장비·시설의 보유현

황 및 이용계획, 주요 농자재와 영농비용의 조달계획

7. 파종·정식, 시비·방제, 관수·배수, 제초, 수확·출하 등 주요 농작업 일정

8. 영농일지, 사진·영상자료, 농자재 구입자료, 농산물 출하·판매자료 등 농업생산활동 자료의 작성·보관·제출 방법 및 영농실적 확인 방법

9. 자연재해, 병해충, 발전설비의 고장·수리·교체, 농지개량 또는 일시적 휴경 등으로 농업생산활동이 곤란한 경우의 영농 지속 또는 재개계획

10.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차기간, 갱신 가능성,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협조사항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농지 복구 책임에 관한 사항

② 발전사업부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필지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및 주요 농작업 일정, 작부체계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사항 중 제5조,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제출한 서류 또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서류 또는 자료의 사본, 제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의 열람·확인에 필요한 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이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농계획에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영농책임자의 성명,

자격·경력, 업무범위, 부재 시 대체관리체계 및 영농실적 관리체계를 포함해야 한다.

제11조(협의 결과의 기록·관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3조 제2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업 규모 제한 또는 조건 설정에 반영하고,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 여부, 지정 의제일, 대상 농지의 위치·면적·경계,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계획 반영에 필요한 사항 및 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농지의 이용현황 및 발전사업부지의 경작·재배계획 자료
2. 발전설비 설치 전후의 농작업 동선 및 농기계 통행계획
3. 제23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상회복계획 및 복구비용 산정자료
4. 토양유실, 배수장애, 농업용수 오염 및 폐기물 발생 방지계획
5. 임차농지의 경우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 중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 또는 자료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지법」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허가증·허가대장)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허가번호, 허가일, 발전사업자, 발전사업부지, 발전설비, 영농계획, 허가조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사항 및 전기사업 허가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증을 발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수리 또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 발전사업기간의 연장
3.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4. 시정명령, 허가취소, 사업정지, 원상회복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 조치

⑤ 발전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대장을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허가대장의 항목과

구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존 허가증
2. 변경 사유서 및 변경 전·후 대비표
3.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한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주민환원계획 또는 원상회복계획
4. 변경사항을 표시한 도면, 산정자료, 계약서, 동의서(임차농지의 경우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및 관계 법령상 인허가·신고·협의 관련 자료
5. 발전사업자가 농업회사법인이고 변경사항이 발전사업부지의 위치·경계 또는 사용권원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6. 변경으로 인하여 영 제9조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변경허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연장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기존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제15조(사업자 지위승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양도·상속·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승계인이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3. 승계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4. 승계인이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인서
5. 발전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임차권·사용대차권 또는 그 밖의 사용권원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임차권을 승계하거나 임차농지에서 발전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6. 종전 허가증
7. 종전 발전사업자의 허가조건, 영농계획, 발전설비 유지관리계획 및 주민환원계획을 승계하여 이행한다는 협약서
8.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에 대한 인가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발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결과 제출계획서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제16조(승계인 사후관리) ①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계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승계인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서류 또는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서류 또는 자료만으로는 제3항 각 호의 점검사항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따른 영농계획의 승계 및 이행 여부
2.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기준의 충족 여부
3. 영 제20조에 따른 특별한 사유 인정 또는 영농 재개계획 이행 여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발전사업부지 사용권원 유지 여부. 이 경우 승계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6호에 따른 요건의 유지 여부를 포함한다.

제17조(농업생산활동의 증명방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영농일지 및 사진·영상자료와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필요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1. 농자재 구입자료
2. 농산물 출하·판매자료, 자가소비 확인자료 및 종자·묘목 확보자료

3. 농업경영정보, 공익직불금 관련 자료 및 농작물재해보험·농업수익
안정보험 가입자료

4. 현장확인 결과, 위치정보, 종합정보시스템 자료 및 그 밖에 농업생
산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작물별·지역별 표준재배기술, 평균 수확량,
재배기간 및 실증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작물별
재배기간, 기준 수확량, 증명방법 및 영농실적 판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18조(일시중단 사유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의
일시중단에 관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증명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의 내용 및 발생일
2. 농업생산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기간
3. 영향을 받는 필지, 면적 및 작물
4. 영농 재개계획, 대체 작물 재배계획 또는 피해복구계획
5.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및 농지 훼손 방지대책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의 존재, 농업생산활동 중단의 불가피성, 영농 재개 가능성 및 농
지 보전상태를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기
간, 대상 면적, 이행해야 할 조치 및 영농 재개기한을 정하여 발전사업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발전설비의 유지·관리)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안전관리체계의 확보
2. 연 1회 이상의 자체점검 및 태풍·호우·강풍·대설·지진·화재 등 재해 또는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수시점검
3. 모듈·지지구조물·기초·배선·접지·접속함·인버터·변압설비·보호장치·감시장치의 이상 여부 확인
4. 농기계 통행공간, 배수·관수시설, 낙수 저감시설, 안전울타리, 안전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유지관리
5. 발전설비의 고장·파손·화재·누전·감전·붕괴·낙하 또는 농업생산활동에 지장이 생긴 경우 응급조치, 관계기관 신고 및 재발방지 조치

② 발전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안전점검 또는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발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조치 결과를 작성한 날 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20조(준수사항 이행자료) ①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인정, 영농

재개, 대체 작물 재배 또는 피해복구에 관한 자료

3. 인접 농지 피해, 민원, 안전사고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발전사업자는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자료를 종이문서, 전자문서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③ 발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준수사항 이행자료를 전자문서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작성·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작성 일시, 작성자, 대상 필지의 지번, 허가번호 및 수정·삭제 등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진·영상자료를 촬영 일시정보 및 위치정보가 보존·확인될 수 있는 전자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진·영상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때에도 그 원본파일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⑤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서식, 자료 입력항목 및 자료연계 방식에 따라 준수사항 이행자료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주민환원계획 세부사항)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환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민환원사

업”이라 한다)의 집행·정산 절차

2. 발전사업 회계와 주민환원사업 회계의 구분관리 방법
3. 주민환원사업의 미집행금 및 집행잔액의 처리방법
4. 주민환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및 공개 방법
5. 주민환원사업의 이해충돌 방지 및 부정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
6. 주민환원 실적의 산정 방법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의 보관 방법

제22조(준수사항 이행 확인)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자료, 농업경영정보, 전력거래자료, 전기안전 관련 검사·점검자료 등 객관자료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

② 현장확인은 작물의 생육상태와 영농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사고, 농지 훼손, 인접 농지 피해, 민원 또는 허가조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준수사항 이행 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 관련 근거자료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23조(원상회복계획서)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거·복구 대상 발전설비 및 부대시설의 종류·수량·위치
2. 철거·복구의 방법, 절차 및 일정
3. 폐모듈, 인버터, 전선, 기초자재 등 폐기물의 처리계획
4. 토양 복원, 배수·관수시설 정비, 농로·농업생산기반 회복 및 인접

농지 피해 방지계획

5. 원상회복 비용 산정내역, 비용 확보방안 및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6. 원상회복 후 농업생산활동 재개 가능성 확인방법

제24조(포상금의 지급신청 등) ① 영 제30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3.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고 내용,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결과, 신고의 기여도 및 영 별표 4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합의서에 따라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신고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25조(표준계약서)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당사자, 임대차 목적 농지, 사용 목적, 농지 임대인의 동의 및 임대차 조건에 관한 사항
2. 발전설비의 설치·운영, 농업생산활동의 유지 및 농지 복구에 관한 사항
3. 계약의 갱신·종료, 책임분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계약서의 서식과 작성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법 제25조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발전사업을 하려는 농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3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제26조(종합정보시스템) ① 법 제20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신고·보고·제출·통지, 자료의 작성·보관·확인 및 그 밖의 사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신고·보고 또는 자료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완료 시에 해당 서류 또는 자료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력·관리할 수 있다.

1. 허가신청, 변경허가, 변경신고, 기간연장, 지위승계 및 허가대장 자료
 2. 발전사업부지, 발전설비, 영농계획, 주민 의견수렴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관련 자료
 3. 준수사항 이행결과, 영농실적 및 발전설비 유지관리 자료
 4. 실태조사, 감독, 감독대행, 시정명령, 행정처분, 원상회복,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 자료
 5. 지원센터 업무, 컨설팅, 교육·홍보, 정책자금 및 연구·기술개발 지원 관련 자료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위임·위탁기관 및 감독대행기관은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때 이미 제출되어 보관 중인 자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서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료가 최신 상태가 아니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이 의심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입력항목, 자료연계 방식, 사용자 권한, 전자문서의 접수·처리 절차 및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7조(감독대행기관) ① 감독대행기관은 감독대행 업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독대행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와 관련 자료를 감독대행을 요청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요청기관, 감독대행의 목적·대상·범위 및 기간
2. 자료 검토, 현장확인, 관계자 면담 등 감독대행의 방법 및 업무 수행자
3. 확인한 사실 및 그 판단 근거
4.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5. 관계 법령 또는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 필요 여부
6. 영 제4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밀유지 및 이해충돌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독대행 업무의 범위에서 요청기관이 감독대행 결과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 또는 관련 자료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완할 사항과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감독대행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독대행기관은 감독대행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비용 산출내역서와 그 산출 근거를 증명하는 자료를 요청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은 감독대행의 범위·기간·방법, 투입 인력 및 비용 산출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독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감독공무원 등의 증표) ①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감독대행기관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증표를 발급받은 사람은 조사·검사 또는 현장확인을 할 때 그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고 조사·검사 또는 현장확인의 목적과 범위를 설명해야 한다.

③ 증표를 발급한 기관의 장은 증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증표의 분실·훼손 또는 담당업무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제29조(위임사무 보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권한의 처리결과를 반기별로 해당 반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202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발전설비의 설치기준 및 산정·측정 기준
2.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농업생산활동 확인자료 및 준수사항 이행 자료의 작성·보관 방법

제5장 벌칙

제3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4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자는 위반행위의 내용, 부과금액, 납부 여부, 이의제기 및 체납처분 현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관리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41조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으로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처리 결과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제29조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 업무처리)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기 전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신청, 신고, 자료제출, 허가대장 관리 및 정보관리 업무를 서면, 전자문서, 전자우편,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임시 전산망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기존 실증사업 등 관련 서류·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 관련 실증사업 또는 시범사업에서 작성·제출된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주민 의견수렴 자료, 안전관리 자료 또는 원상회복계획은 이 규칙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서류 또는 자료로

같음할 수 있다.

제4조(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조례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지침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에는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 유형 ☐ 농업인 ☐ 청년농어업인 ☐ 주민참여협동조합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고유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	사업의 종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표 발전사업부지		
내용	발전용량	kW(MW)	전기사업 허가(접수)번호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합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 확인자료[「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의 농업인에 한정합니다] -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인서 - 규칙 제5조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자료(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규칙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농지 임차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증 사본 또는 전기사업 허가 신청·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전기사업 허가 신청·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전까지 전기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규칙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 - 규칙 제9조에 따른 발전설비계획 및 설계도서 - 규칙 제10조에 따른 영농계획 - 규칙 제12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관련 서류 - 발전사업의 자원조달계획, 보험가입계획, 안전관리계획, 인접 농지 피해방지계획 및 발전사업 종료 후 발전설비 철거·폐기물 처리계획 -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 제23조에 따른 주민환원계획 -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영 제11조에 따른 허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조합 관련 등록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지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농업경영정보, 공익직불금 관련 정보 등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거주요건 확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전기사업 허가 및 관계 인허가 관련 행정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8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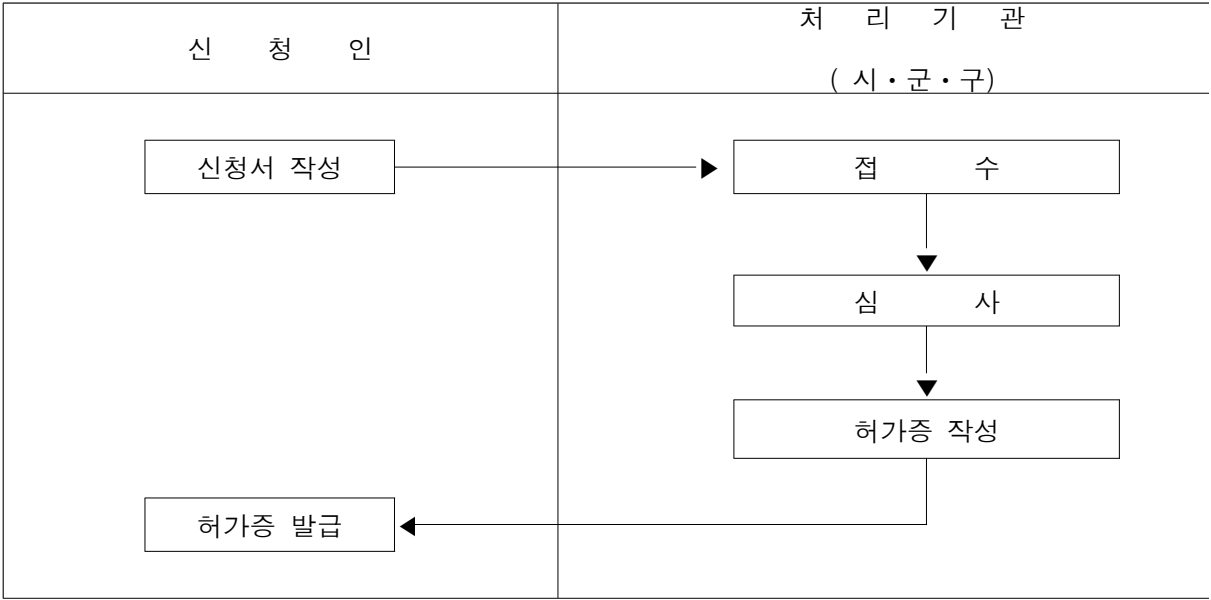
※ 발전사업부지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사업부지 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사용권원	시설물 점유면적(㎡)	비고
시·군·구	읍·면	리·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대장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습니다.

1.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일	년 월 일
발전사업자 (허가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 유형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고유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 발전사업부지			발전용량	kW(MW)
전기사업 허가 (접수)번호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주민환원	
영농계획				
주요허가조건				

2. 발전사업부지 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사용권원	시설물 점유면적 (㎡)	비고
시·군·구	읍·면	리·동						

3. 변경·연장·승계 및 사후관리 기록

연번	구분	일자	주요내용	근거서류·처분번호	허가증 정정여부
1					
2					
3					
4					
5					

※ 작성방법

1. 사업자 유형란에는 농업인, 청년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

2. 변경허가·변경신고, 발전사업기간 연장, 사업자 지위승계, 시정명령, 허가취소·사업정지, 원상회복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허가 후 변동사항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증									
발전사업자 (허가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 유형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고유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 발전사업부지						발전용량		kW (MW)	
전기사업 허가 (접수)번호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주민환원			
영농계획									
주요허가조건									
발전사업부지 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사용권원	시설물 점유면적 (㎡)	비고	
시·군·구	읍·면	리·동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작성방법

1. 사업자 유형란에는 농업인, 청년농어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
2. 사용권원란에는 소유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또는 그 밖의 사용권원 중 해당 권원을 적습니다.
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사항란, 주민환원란, 주요허가조건란의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허가증에 붙일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변경허가신청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 변경신고서
[] 연장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에는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기존허가번호		허가일	
신청 (신고)인	성명(명칭)	사업자 유형	☐ 농업인 ☐ 주민참여협동조합 ☐ 영농조합법인 ☐ 청년농어업인 ☐ 농업회사법인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고유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 발전사업부지		
	기존발전용량	kW(MW)	기존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변경 또는 연장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예정)일
연장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사유	연장 후 총사업기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연장 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통: 기존 허가증 2. 변경허가신청: 변경 사유서 및 변경 전·후 대비표 3. 변경허가신청: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한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주민환원계획 또는 원상회복계획 4. 변경허가신청: 변경사항을 표시한 도면, 산정자료, 계약서, 동의서(임차농지의 경우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및 관계 법령상 인허가·신고·협의 관련 자료 5. 변경허가신청: 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자료 6. 변경허가신청: 변경으로 인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 7. 변경신고: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8. 발전사업기간 연장신청: 연장하려는 기간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9. 발전사업기간 연장신청: 발전사업부지의 사용권원이 연장기간 동안 유지됨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임차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가능성 및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10. 발전사업기간 연장신청: 최근 3년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자료. 다만, 최초 허가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행자료 11. 발전사업기간 연장신청: 발전사업자가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 12. 발전사업기간 연장신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점검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3. 주민환원 의무가 있는 경우 주민환원 실적 및 향후 이행계획 14. 원상회복 비용의 확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기존 허가대장 및 허가조건 2. 준수사항 이행 확인 결과 및 종합정보시스템에 보관 중인 기존 제출자료 3. 전기사업 허가, 농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계 행정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에는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	-----

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합병 ☐ 분할	승계(예정) 일	
기존허가번호		기존허가일	

신고인 (승계인)	성명(명칭)	사업자 유형	☐ 농업인 ☐ 주민참여협동조합 ☐ 영농조합법인 인	☐ 청년농어업인 ☐ 농업회사법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고유번호		
	주소	연락처		
	전기사업법상 허가·변경허가·인가·지위승계 ☐ 완료 ☐ 진행 중 ☐ 신규 인허가 필요			

종전 발전사업자 (피승계인)	성명(명칭)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고유번호	
	주소	연락처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일	년 월 일	합병·분할의 경우 법인등기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상속·합병 또는 분할 등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승계인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3. 승계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4. 승계인이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인서 5. 발전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임차권·사용대차권 또는 그 밖의 사용권원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임차권을 승계하거나 임차농지에서 발전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6. 종전 허가증 7. 종전 발전사업자의 허가조건, 영농계획, 발전설비 유지관리계획 및 주민환원계획을 승계하여 이행한다는 약약서 8.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에 대한 인가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발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결과 제출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조합 관련 등록사항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거주요건 확인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농업경영정보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기존 허가대장 및 허가조건 6. 전기사업 허가 관련 행정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33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	허가증 정정발급
----------------	---	-----	---	-----	---	-------------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고한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일시 또는 기간			위반행위의 장소
위반행위의 주요내용			
사건처리결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3.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	포상금 지급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안내

- 포상금은 신고가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조사 또는 처분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시정명령, 허가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됩니다.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처분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 내용이 이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지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고인이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위반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신고 내용이 거짓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또는 포상금 지급의 근거가 된 처분 등이 취소·변경되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번호:

감독공무원 등의 증표

사 진

3cm×4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에 모자 등을 쓰지 않
고 뒤 그림 없이 촬영
한 상반신 정면사진)

성 명

소속기관명

(뒤쪽)

감독공무원 등의 증표

소 속:

직위/직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검사, 현장확인 또는 감독대행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직인

〈주 의 사 항〉

1. 감독공무원 등이 해당 감독대행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항상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
2.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 증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3. 이 증표의 기재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1 - 2853